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참 고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1. 7.(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과장	정하늘 과장(044-203-4880) 윤성혁 과장(044-203-4330)	담 당 자	정문희 사무관(044-203-4882) 김덕구 사무관(044-203-4331)

일본,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

□ 일본은 11.6.(화)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

○ 일본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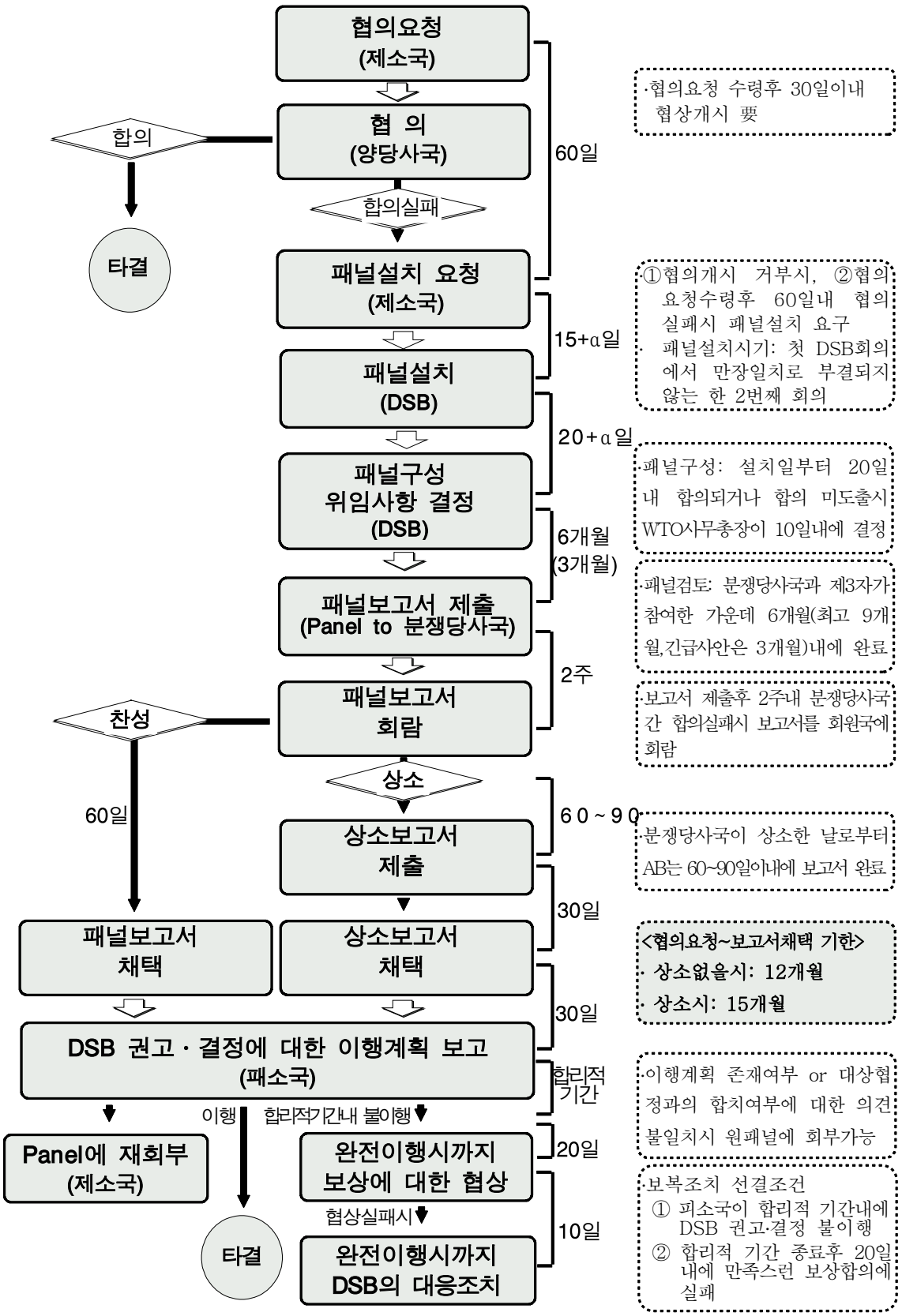
□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에스티엑스(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송부해왔다.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끝.

붙임

WTO 분쟁절차도


협의요청
(제소국)
협 의
(양당사국)
합의
타결
합의실패
패널설치 요청
(제소국)
패널설치
(DSB)
패널구성
위임사항 결정
(DSB)
패널보고서 제출
(Panel to 분쟁당사국)
패널보고서
회람
찬성
60일
상소
상소보고서
제출
패널보고서
채택
상소보고서
채택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이행
합리적기간내 불이행
Panel에 재회부
(제소국)
완전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
협상실패시
타결
완전이행시까지
DSB의 대응조치
60일
15+α일
20+α일
6개월
(3개월)
2주
60~90
30일
30일
합리적
기간
20일
10일
·협의요청 수령후 30일이내 협상개시 要
①협의개시 거부시, ②협의요청수령후 60일내 협의실패시 패널설치 요구
· 패널설치시기: 첫 DSB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2번째 회의
·패널구성: 설치일부터 20일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시 WTO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
·패널검토: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긴급사안은 3개월)내에 완료
·보고서 제출후 2주내 분쟁당사국간 합의실패시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
·분쟁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AB는 60~90일이내에 보고서 완료
<협의요청~보고서채택 기한>
· 상소없을시: 12개월
· 상소시: 15개월
·이행계획 존재여부 or 대상협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시 원패널에 회부가능
·보복조치 선결조건
①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내에 DSB 권고·결정 불이행
② 합리적 기간 종료후 20일내에 만족스런 보상합의에 실패